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50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 변경(별표 부표)

○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련 근거 규정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팩스 : 044-201-5530
- 이메일 : pp1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4, 3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